

부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0. 8. 25

나. 제출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00. 8. 25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80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(2000. 9. 2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복지환경국장 홍건표)

가. 개정이유

- 부천시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시 직영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위탁운영되는 혼합직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
- 「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3조제2항」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1인의 연간 사무량이 300일 이상인 사무의 경우에 정원으로 책정되지 아니한 상근인력을 배치하여 처리할 수 없어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- 자원봉사센터 설치업무 중 센터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직원을 채용하여 유급하는 규정 삭제(안 제5조제2항)
-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에게 센터 운영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(안 제7제2항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위탁을 하면 관리감독의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? ○ 제8조제3항의 위원회의 구성에 시의회 의원을 지역주민 대표로 바꾼 이유는?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위탁해도 관리감독을 안하는 것은 아님. 시에서 필요시 감독함 ○ 지역주민 대표에 시의원이 포함되기 때문임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 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 음

5. 수정안의 요지

○ 별첨 참조

6. 심사결과

○ 수정의결

7 소수의견요지

- 기금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을 배제한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현행대로 시의원을 위원으로 해야 함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 음

부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의안번호	제368호
의결년월일	2000. 9. 5 (제80회)

제출년월일 : 2000. 9. 2

제 출 자 : 행정복지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는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, 봉사단체의 지원·육성 및 기타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능이 있음
- 위원은 관련 공무원 외에 시민의 대표자 및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여러 계층의 분야로 구성되어야 하나 현행 조례에도 규정되어 있는 시의원을 삭제하고 대신 지역주민 대표로 바꾸려는 것은 시민의 대표를 배제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음
- 따라서 위원구성 중 시의회 의원 2명 내외 내용을 현행대로 두는 것으로 수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골자

- 안 제8조제3항의 내용 중 “지역주민 대표”를 “시의회 의원 2명 내외”로 수정

부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부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8조제3항 내용 중 “지역주민 대표”를 “시의회 의원 2명 내외”로 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8조(구성 및 기능) ①(생략)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.	제8조(구성 및 기능) ①(현행과 같음) ②.....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.	제8조(구성 및 기능) ①(개정안과 같음) ②(개정안과 같음)

<p>③위원회 구성은 <u>관계공무원</u> <u>약간명, 시의회 의원 2명 내외,</u> <u>관련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</u> <u>하고 덕망이 있는 교수나 민간</u> <u>인 8명 내외로 시장이 위촉한</u> <u>다.</u></p>	<p>③.....<u>덕망이 있는</u> <u>교수 및 지역주민대표, 교육계</u> <u>인사, 유관단체인사, 관련공무</u> <u>원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</u> <u>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</u></p>	<p>③.....<u>덕망이 있는</u> <u>교수 및 시의회 의원 2명 내</u> <u>외, 교육계인사, 유관단체인사,</u> <u>관련공무원 등 학식과 경험이</u> <u>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</u> <u>한다.</u></p>
---	--	---

[수정안 포함]

부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중 제2항을 삭제하고 제1항을 본문으로 한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운영) ①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에게 센터운영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한다.

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하고 동조제4항 및 제5항을 삭제한다.

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.

③위원회 구성은 덕망이 있는 교수 및 시의회 의원 2명 내외, 교육계인사, 유관단체인사, 관련공무원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2조 내지 제14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부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 제5조(자원봉사센터의 설치) ①(생략)</p>	<p>부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 제5조(자원봉사센터의 설치) ①(현행과 같음)</p>

②센터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무국을 두고 유
급직원으로 전문지도자, 전산요원 등 필요한 인
원을 둘 수 있으며 임무, 자격요건, 처우, 배치
인원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7조(운영) 부천시장은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센
터의 운영을 시에서 직접 관리 운영한다.

제8조 ①(생략)

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
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.

③위원회 구성은 관계공무원 약간명, 시의회
의원 2명 내외, 관련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
덕망이 있는 교수나 민간인 8명 내외로 시장이
위촉한다.

④ 및 ⑤(생략)

제9조 ①(생략)

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센터 소장
을 겸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
대행한다.

제12조~제14조(생략)

②(삭제)

제7조(운영) ①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
기 위하여 운영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단체 또는
법인에게 센터운영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경우
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
진및관리조례에 의한다.

제8조 ①(현행과 같음)

②.....7인 이상 15인 이
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
위원회에서 선출한다.

③.....덕망이 있는 교수 및 지역주
민 대표, 교육계인사, 유관단체인사, 관련공무원
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
촉한다.

④ 및 ⑤(삭제)

제9조 ①(현행과 같음)

②.....위원장이 하
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2조~제14조(삭제)